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10. 1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 제안이유

강서구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안 제5조)

1

- 라.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 위촉해제, 회의, 실무 협의회 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 2)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 3)「인성교육진흥법」제4조
 - 4)「진로교육법」제5조
- 5)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 기타
 - 1) 입법예고(2017. 8. 23.~9. 12.)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강희순)

- 본 조례안은 2016. 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고 운 영·지원을 높여 교육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 제4조는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안 제5조는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실무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으로
- 안 제12조는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공동 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학생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을 원활하게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붙임 관계법령 1부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전문개정 2007.12.21.]

야 하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9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6호, 2015.6.22., 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 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78호, 2017.1.5.,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